예 비 심 사 보 고 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안번호
927

2026. 4. 22.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 4. 7.(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6. 4. 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상정)2026. 4. 20. ~ 22. / (의결)2026. 4. 22.

2. 예산안 규모

○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별(일반+특별회계)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비고
총 계	570,085,282	466,259,213	103,826,069	22.27%
일 반 회 계	343,420,341	288,970,296	54,450,045	18.84%
특 별 회 계	226,664,941	177,288,917	49,376,024	27.85%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진원)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662억 5,921만 3천원에서 22.27% 증가한 5,700억 8528만 2천원으로 시 전체 예산안의 24.48%에 해당함.

일반회계 주요 사업별 예산은

-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536억 3,368만 4천원 보다 2.29% 증가한 548억 6,232만 8천원이며, 남양주시 생활권 계획 수립 용역 11억 5,000만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4,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다음은,
  교통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601억 3,030만 7천원 보다 11.37% 증가한 1,783억 3,637만 9천원이며,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 58억 8,729만 8천원,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 36억 5,461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다음은,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83억 3,767만 1천원 보다 334.11% 증가한 361억 9,452만 1천원이며, 원도심 재정비사업 1억 8,000만원, 도시계획도로(중로3-339호선) 개설공사 6억원 등을 편성하였음.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295억 4,105만 2천원보다 5.04% 증가한 310억 3,044만 5천원이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2억 5,000만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4억 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373억 2,758만 2천원 보다 15.19% 증가한 429억 9,666만 8천원이며, 도로유지보수 5억원, 구조물 안

전점검 9억원, 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 이전 사업 1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주요 사업별 예산은

-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0억 7,790만 3천 원보다 7.22% 감소한 47억 1,14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음.

-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5억 3,307만 3천 원보다 17.69% 증가한 147억 4,986만원을 편성하였음.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억 6,654만 원보다 4.13% 감소한 3억 5,141만 원을 편성하였음.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주요 사업별 예산은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68억 6,117만 8천 원보다 18.87% 증가한 675억 9,36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음.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24억 5,020만 2천 원보다 35.93% 증가한 1,392억 5,860만 원을 편성하였음.

-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 확정 후 예측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과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기타 여건의 변화로 세입세출에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편성되는 예산안으로,

■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한 법적 요건과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라는 사실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 이러한 요건의 충족여부와 함께 기정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및 예산 산출액의 적정성 등 심사 방향을 고려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보고 요지

❍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적시에 쓰일 수 있어야 하며, 매년 습관적·반복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집행계획을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반영하여야 함.

❍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및 예산 산출액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심도 깊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요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7. 심사결과

○「원안가결」